

보도시점 2026. 8. 19.(수) 10:00 / 배포 2026. 8. 19.(수) 08:30

제24회 모의 공정위, 이틀간의 열띤 경연 성황리 마감 참신한 시각과 논리로 공정거래 이슈 풀어내

- 한양대 법전원팀 대상, 서울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 및 연세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수)부터 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치열한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이 양일간 본선 무대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공정위 심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 대상을 차지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은 간편결제·가상 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혼합결합을 주제로, 결합회사의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운영 등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인접 신규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및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풀필먼트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 풀필먼트 업체의 물류 데이터 확보 및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등의 행위를 다루었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관리 소프트웨어(ERP)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 등 AI 관련 주제를 다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최근 우리 경제의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치하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체계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철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및 양충열 변호사(법무법인 진)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기본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1>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 발표 내용 요약

<별첨 2>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주요 장면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121)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0-4123)



별첨 1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 발표내용 요약

* 최우수상 2개 팀은 발표순 배치

팀명	주요 내용(요지)
대상 (한양대 법전원)	□ ○○○○○○○○(주)와 (주)◇◇◇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3,000만 명의 지갑과 833조 원의 거래소가 하나가 된다." 간편결제 1위와 디지털자산 1위, 금융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다. 3,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간편결제 1위 사업자 '○○○○○○'와 833조 원의 거래대금을 굴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통합된다. [심사관] "미래 시장의 지배력을 선점하는 거대 생태계의 탄생" 심사관은 이 결합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님을 경고한다. 결제와 투자의 방대한 데이터가 하나로 융합되고, 통합 멤버십이 강력한 고착(Lock-in) 효과를 낳는다. 특히 발행-유통-결제로 이어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단일 기업이 독식함으로써, 태동기 시장의 잠재적 경쟁을 본질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피심인]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국산 금융 인프라의 필수적 혁신" 피심인은 맞선다. 가상자산은 이미 국경이 없는 무한 경합 시장이며, 구체화되지도 않은 미래 시장의 독점을 예단하여 사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본 결합은 거대 글로벌 자본에 대응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율성 증대 행위'임을 항변한다. 독점의 선제적 차단인가, 혁신을 위한 도약인가. 이종(異種) 거대 플랫폼 간 혼합결합의 한계선은 어디까지인가? 미래 금융의 판도를 결정지을 치열한 공방이 지금 시작된다.
최우수상 (서울대 고려대 법전원)	□ (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즘 사람들은 자기 전에 택배 빨리 도착하는 주파수를 틀고 잔다며?"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주문을 했으면 못해도 그날 출발하고 다음 날은 받아야 하는, 빨리빨리의 민족. 배송이 늦는 상점에서는 구매조차 하지 않는다. 한때 ★★★는 오픈마켓 셀러와 배송 전담 풀필먼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다. 셀러에게도, 풀필먼트사에게도 효자 역할을 해주던 ★★★. 그런데, 이런 효자 ★★★가 어느 순간 스스로 배송을 시작하면서 풀필먼트 업계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협력 풀필먼트사에게 ★★★의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데 이어, 이제는 ★★★ 직배송을 사용하는 셀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검색 상위노출, M배송 배지, 3X적립까지... 자사 풀필먼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각종 혜택을 마련한 ★★★. 독립 풀필먼트사는 고객을 잃고 셀러는 선택지를 잃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의 행위는 오픈마켓에서의 힘을 이용해서 풀필먼트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시장지배력 전이라고 본 것. 한편 ★★★는 자나깨나 소비자의 편익과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서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될 것인가?

팀명	주요 내용(요지)
최우수상 (연세대 법전원)	□ (주)▽▽▽▽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주)△△△△△△△△ 등 5개 임대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AI와 데이터가 만든 스마트한 임대관리, 그 이면에 감춰진 정보교환 합의의 경쟁제한성.”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용어가 임대주택 시장의 화두로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요 임대사 5곳이 모두 (주)▽▽▽▽의 임대관리 ERP를 구독한 뒤로 임대료의 상향평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ERP의 임대료 추천 알고리즘 ‘AI ㅎㅎㅎ ㅎㅎㅎ’는 임대사들의 구체적 계약 조건, 무상임대기간 등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 유사 매물과 비교해 투입 매물의 권장 임대료를 제안한다. 합리적 가격 책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5개 임대사들의 임대관리 ERP 구독 및 권장 임대료 준수 행위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ERP를 제공하는 (주)▽▽▽▽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동일한 알고리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정보교환으로도, 합의로도 볼 수 없다며 반박한다. 나아가 권장 임대료 추천 기능은 공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탐색비용 절감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주장한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AI 알고리즘. 과연 이는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발전인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정교한 담합의 새로운 수단인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개회사



심사관 측 발언



피심인측 발언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